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665
----------	-----

2017. 9. 11(월)
행 정 문 화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17년 8월 21일

다. 회부일자 : 2017년 8월 24일

라. 상정일자 : 2017년 9월 4일

- 제3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 · 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오진섭 행정국장)

가. 제안사유

-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도·시·군간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향후 북한이탈주민수의 증가로 시·군별 자체 지역협의회 추가 신설이 예상됨에 따라 「충청북도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위원정수 증원
- 내실 있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방안 논의를 위한 당연직 위원 직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충청북도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위원정수 확대 및 당연직 위원직책 조정 (안 제5조)

3. 검토보고 요지

○ 금번 개정조례안은

○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도·시·군간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향후 북한이탈주민수의 증가로 시·군별 자체 지역협의회 추가 신설이 예상됨에 따라 「충청북도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위원정수를 증원하고, 내실 있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방안 논의를 위한 당연직 위원 직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 2017년 현재 충청북도의 북한이탈주민은 1,141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5위를 차지하고 있음. 또한 초기 시군별 지역협의회가 제천 1곳이었다가 지속적으로 지역협의회가 증가하여 현재는 8개 시군에 지역협의회가 존재하고 있음. 따라서 15명으로 되어 있는 충청북도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의 위원 정수를 20명으로 증원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지역협의회 위원장이 6개 시군은 부단체장으로 되어 있어 협의회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 당연직 위원의 직책을 실질적인 회의 참석자인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함으로써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할 수 있는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665 호
의 결 연 월 일	2017년 월 일 (제 358 회)

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7년 8월 21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칩

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65

제출연월일 : 2017년 8월 21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도-시·군간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향후 북한이탈주민수의 증가로 시·군별 자체 지역협의회 추가 신설이 예상됨에 따라 「충청북도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위원정수 증원
- 내실 있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방안 논의를 위한 당연직 위원 직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사항

2. 주요내용

- 충청북도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위원정수 확대 및 당연직 위원 직책 조정 (안 제5조)

3. 의안전문 : 불 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불 임

5. 관계법령 발췌 : 불 임

6.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15명”을 “20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5조의 2조”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의2에”로, “위원장”을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충청북도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구성 등) ① (생략)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u>15명</u>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1호 및 제2호는 당연직으로 한다. 1. (생략)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5조의 2조 따라 충청북도 시·군에 구성된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u>위원장</u> 3.~5. (생략) ③~⑤ (생략)	제5조(충청북도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u>20명</u> ----- ----- ----- ----- ----- 1. (현행과 같음)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u>의2에</u> ----- ----- <u>업무 담당 부서장</u> 3.~5. (현행과 같음) ③~⑤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거주지 보호)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정착하여 스스로 생활하는 데 장애가 되는 사항을 해결하거나 그 밖에 자립·정착에 필요한 보호를 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호 업무를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취학 여부 등 교육현황
2. 취업직종·근로형태·근속기간·임금수준·근로조건 등 취업현황
3. 주거현황
4. 의료지원 및 생활보호 현황
5. 그 밖에 거주지 보호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통일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설치·운영)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거주지보호를 위하여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협의회는 제42조에 따라 신변보호를 담당하는 공무원, 고용노동부 고

용센터 소속 공무원과 법 제30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및 종교단체·민간단체 또는 기업의 관계자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지역협의회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구성)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지역(이하 “지역”이라 한다)내 다양한 지원자원을 발굴하고, 공유·협력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관련 사업 등의 중복을 방지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정착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내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상으로 지역협의회를 구성한다.

③ 북한이탈주민 100인 이상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협의회 설립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역협의회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설립에 관한 제반 사항을 통일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제4항 제1호

○ 사 유

-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의거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논의하기 위해 설립된 협의체로 통일부장관으로부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매년 지원받고 있음
 - * ('17년) 지역협의회 운영경비 : 도 4,000천원, 시·군 17,000천원 (전액국비)
- 금번 조례개정안은 도, 시·군간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체계를 지속 마련하고, 북한이탈주민수의 지속적 증가로 향후 시·군별 자체 지역협의회 추가 신설이 예상됨에 따라,
 - * 시·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위원장 : 도 협의회 당연직 위원
-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위원회 위원정수를 증원하고 당연직위원 직책을 동일하게 조정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금번 조례 개정안에 따라 수반되는 재정부담 사항은 없음

○ 작성자

- 행정국 자치행정과장 고 행 준